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196
----------	------

2022년 6월 21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5월 20일 이정인 의원
2. 회부일자 : 2022년 5월 27일
3. 상정일자 :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2.6.13.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이정인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자해·공격 등 도전적 행동 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사항을 규정함.(안 제7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나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한광모)

1 개정안의 취지

-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타해, 자해 등의 행동으로,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행동 또는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 하게 하는 행동임.¹⁾
- 본 개정 조례안은 자해·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.

2 개정안의 주요검토 의견

가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- 본 개정 조례안은(안 제7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신설) 자해·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지원을 추가하도록 규정하였음.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지원 사업)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7조(지원 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
1) 김미옥 외,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모형개발 연구, 2018년

1. ~ 9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 10. (생략) ② (생략)	1. ~ 9의2. (현행과 같음) <u>10. 자해·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</u> 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

나. 개정안에 대한 검토

- 2021년 12월 기준 서울시 등록 장애인은 392,123명이며, 이 중 발달장애인은 34,185명(지적장애인 27,330명, 자폐성 장애인 6,855명)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 수 대비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8.7%임.
- 연도별 등록장애인의 비율을 살펴보면, 대부분의 장애유형의 비율이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는 반면,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은 소폭이지만 꾸준히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.

<서울시 등록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수>2)

(21.12월말, 명, %)

장애유형	합계	심한 장애			심하지 않은 장애		
		계	남성	여성	계	남성	여성
전체	392,123	147,861	88,778	59,083	244,262	138,524	105,738
	(100%)		(60.1%)	(39.9%)		(56.8%)	(43.2%)
발달장애	34,185	34,185	22,512	11,673	0	0	0
	(8.7%)		(65.9%)	(34.1%)	(0.0)	(0.0)	(0.0)

2) KOSIS 국가통계포털 장애인현황

〈연도별,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수〉

(단위: 명.%)

연도	2017	2018	2019	2020	2021
전 체	391,753	392,920	394,843	394,190	392,123
지적	25,654	26,231	26,778	27,084	27,330
자폐성	5,401	5,798	6,100	6,415	6,855

- 도전행동은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공격, 자해행동, 파괴행동, 소리지르기 등을 지칭하는데 특별한 보살핌을 요구하는 중한 수준은 10~20세에 발생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20~40세에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남.³⁾
- 발달장애인은 도전적 행동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으며 의사소통 및 사회성 기술이 낮기 때문에 지역사회활동에서 제외되기 쉽고 개입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통합에 어려움을 겪게 됨.
-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가족의 권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⁴⁾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⁵⁾, 시행규칙 제17조⁶⁾는 국가와 지방

3) 이병화, 김준번, 발달장애인의 도적적 행동이 보호자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영향 2018년

4)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·제24조(재활 및 발달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5)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·제11조(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자해·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업무
2.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
3.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
4.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의 양성 업무
5. 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
②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
6)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17조(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(이하 “행동발달증진센터”라 한다)에는

자치단체가 자해·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
- 최근에는 발달장애에 도전행동이 동반되는 경우, 도전 행동의 심각도와 양상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.⁷⁾
-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주간활동 서비스, 활동지원 서비스,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가 있음. 복지관 이용 등에서도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서비스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16%가 도전적 행동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음.⁸⁾

<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>

(단위:백만원)

서비스명	지 원 내 용	예산액	비고
최중증 장애인 낮 활동 지원	- 대상 :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도전적 행동을 가진 성인 발달장애인 - 도전적 행동 감소를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지원 및 부모교육·상담	171	17개소
주간활동 서비스	- 대상 : 만18세 만65세미만 발달장애인 -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- 단축형100시간, 기본형144시간, 확장형 176시간이내 사용(※시비추가44시간 추가지원 포함된 시간)	14,947	19개자치구 33개소

다음 각 호의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

1.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장 1명
2.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 3명 이상
- ②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와 치료에 필요한 장치로서 안전벽, 안전문,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관찰시설, 비상벨, 모서리 안전장치, 놀이공간 등을 설치한 치료실을 독립된 공간으로 3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- 7) 김미옥 외,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가이드, 2018년
- 8) 강정배외,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맞춤형 급여체계 연구, 2021년

발달장애인 재활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 :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바우처 카드 소지자 -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제공 	21,439	- 장애인복지관 51개소 등
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

- 서울시의 성인 최종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도전 행동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낮추었음이 확인되었음.⁹⁾
- 이와 같이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존재하지만 현행 「서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관련 상담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문이 없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됨.

3 종합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도전적 행동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전문 상담 및 치료지원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
-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 지원을 확대하고 그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9) 김미옥 외, 최종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보고서, 2019년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Ⅴ. 토 론 요 지 : 「없음」

Ⅵ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

(이정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19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5월 20일

발 의 자 : 이정인, 권수정, 김제리,
김화숙, 박기재, 양민규,
오현정, 이병도, 이호대,
홍성룡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자해·공격 등 도전적 행동 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해·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제1항제10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자해·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지원 사업)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9의2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0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7조(지원 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자해·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</u></p> <p>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